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ING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 27763)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ING자산운용주식회사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3년 3월 7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3월 19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3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 (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①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기별/지수대별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적립식 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종목분석에 입각한 Bottom UP approach (상향식방식)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op Down(하향식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Top Down Approach

개별주식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 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산업, 국가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자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Bottom Up Approach

개별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 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을 가지고 주식이 선택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종목선택 전략

수익 및 가치 모델을 활용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및 기업방문, 외부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등 지속적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종목을 발굴합니다.

시장상황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우량주를 편입합니다.

시장 및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편입합니다.

③ 기타자산에의 투자

채권에의 투자는 40%이하로 투자합니다.

유동성자산등에의 투자는 규약에서 정한 비중 및 신용등급 자산에 따라 투자합니다.

④ 비교 지수(벤치마크) : KOSPI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투자 유니버스 관리

당사의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유니버스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②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합니다.

③ 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3)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ING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40% 초과, 최고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중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ING자산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	
전경대	1973	수석 펀드매니저	7	651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삼성증권 - 새마을금고연합회 주식운용팀 - 현 ING자산운용 주식액티브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3.08 ~13.03.07	11.03.08 ~12.03.07	10.03.08 ~11.03.07	09.03.08 ~10.03.07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	0.31	-1.47	26.22	68.70	-37.81
비교지수	1.12	0.09	21.15	54.93	-36.60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A	-1.22	-2.76	21.72		
비교지수	1.12	0.09	21.46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C1	-1.83	-3.43	24.63	68.70	-37.81
비교지수	1.12	0.09	24.74	54.93	-36.60
ING	-1.23	-2.77	22.33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C-e					
비교지수	1.12	0.09	21.46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C2	-1.68	-3.51			
비교지수	1.12	0.09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C3	-1.56	-70.18			
비교지수	1.12	-4.29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C4	-67.81	-3.96			
비교지수	-2.33	0.09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C5	-1.29	-3.10			
비교지수	1.12	0.09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종류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종류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없음
종류C2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3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4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e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종류C-i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종류C-d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 분배금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종류C-d 수익증권에 한하여 매1년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분배 전 순자산가치의 10% 이내에서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
2. 분배금 지급일: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3.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은 경우 분배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액은 좌수를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분배금 지급일 제 3영업일 전일에 분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i	종류C-d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i	종류C-d	
집합투자업자보수	0.6250	0.6250	0.6250	0.6250	0.6250	0.6250	0.6250	0.6250	0.6250	
판매회사보수	0.9000	1.5000	1.3750	1.2500	1.1250	1.0000	0.9000	0.0500	0.0600	
신탁업자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기타비용	0.0043	0.0051	0.0047	0.0024	0.0047	0.0049	0.0046	0.0051	0.0051	-
총보수 및 비용	1.5693	2.1701	2.0447	1.9174	1.7947	1.6699	1.5696	0.7201	0.7301	-
증권거래비용	0.4573	0.6573	0.4233	0.3892	0.9192	0.4842	0.4552	0.6573	0.6573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1.03 ~ 2013.01.02]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 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1.03 ~ 2013.01.02]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264	611	981	2,019
종류C1수익증권	227	661	1,062	2,146
종류C-e수익증권	164	511	881	1,920
종류C-i수익증권	75	236	511	918
종류C-d수익증권	76	239	417	93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 세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나)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요약 재무제표

(단위: 원, %)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0 기	제 9 기	제 8 기
	(2013.01.02)	(2012.01.02)	(2011.01.02)
운용자산	47,619,166,487	61,145,469,154	107,058,063,955
증권	47,393,813,175	60,924,686,270	105,709,467,75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25,353,312	220,782,884	1,348,596,20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69,719,097	2,304,784,625	3,961,808,758
자산총계	48,088,885,584	63,450,253,779	111,019,872,71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97,080,945	1,922,962,496	3,493,230,899
부채총계	297,080,945	1,922,962,496	3,493,230,899
원본	48,413,550,659	66,479,821,874	91,340,141,408
수익조정금	-728,716,644	-2,293,368,805	-12,300,208,385
이익잉여금	106,970,624	-2,659,161,786	28,486,708,791
자본총계	47,791,804,639	61,527,291,283	107,526,641,81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0 기	제 9 기	제 8 기
	(2012.01.03 - 2013.01.02)	(2011.01.03 - 2012.01.02)	(2010.01.03 - 2011.01.02)
운용수익	3,709,666,847	-2,658,655,365	34,710,743,817
이자수익	35,367,780	80,303,353	69,896,372
배당수익	483,343,481	845,133,940	1,502,049,490
매매/평가차익(손)	3,190,955,586	-3,584,092,658	33,138,797,955
기타수익	5,055,973	1,363,579	32,304,702
운용비용	0	0	2,137,777,701
관련회사 보수	0	0	2,103,179,061
매매수수료	0	0	34,598,640
기타비용	3,607,752,196	1,870,000	4,118,562,027
당기순이익	106,970,624	-2,659,161,786	28,486,708,791
매매회전율	262.91	445.31	459.66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회사보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합니다.

1. Unicef(세계아동구호기금)의 후원
 2. 노후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관련 단체의 지원
 3. 아동 및 장애우의 생활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관련 단체의 지원 등
 4.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등
- ③ 상기기금은 투자신탁에서 추가로 인출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및 판매회사의 보수에서 인출하므로 수익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